

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9. 3.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'99. 3. 30
- 다. 상 정 일 자 : '99. 3. 30 (제7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안설명 : 환경과장 김 재 월
- 나. 개정사유
 -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기 위함.
- 다. 주요내용
 - 안 제19조 폐지

군수는 개선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유료 화장실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징수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양 정 열)

- 본 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유료 화장실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도복 한 조항을 삭제키 위한 개정조례안임.
-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, 개정 절차상이나 상위법령 관련 저촉 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요지

"생 략"

5. 토론요지

"생 략"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첨 부 :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 (과태료의 부과징수 등)를 삭제한다.

[별표] 와 (별지 제6호 서식), (별지 제7호 서식)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8조 (과태료의 부과징수등) ①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.</p> <p>③군수가 제1항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④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,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한다.</p> <p>⑤제1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, 이의제기 및 강제징수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20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18조 (삭제)</p>